

제25-긴급2차 규칙개정위원회 회의록

2025년도 긴급2차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회의일시 : 2025. 2. 24.(월) 14:00
- 회의장소 : 화상회의
- 심의결과

1. 규칙개정안건

안건수	원안 가결	수정 가결	심의 보류	부결
1건	-	1건	-	-

2. 일반의결안건 · 보고안건

일반의결안건					보고안건	
안건수	원안 가결	수정 가결	심의 보류	부결	안건수	원안 접수
-	-	-	-	-	1건	1건

- 붙임 :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2. 보고사항 결과

2025. 2. 24.

위원장	한국 전력 거래소	정 동 희
위원	한국 전력 거래소	옥 기 열
	산업통상자원부	김 남 혁
	단국대학교	조 흥 종
	건국대학교	노 재 형
	법무법인광장	조 영 재
	한국 전력 공사	오 흥 복 (대리참석)
	한국 중부발전	김 광 일 (불참)
	포스코인터내셔널	김 권 종
간사	한국 전력 거래소	안 병 진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안건명 : 직접구매 제도 정비를 위한 규칙개정(안)

긴급2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25-긴급2-1호

개최일시 2025년 2월 24일 14:00

제안자 전력거래소

< 주요 개정내용 요약 >

	구분	기존	개정(안)	
제안내용	합리성 · 공정성 · 신뢰성	용어변경	의무존속기간 거래유지기간	
		거래유지기간	기간	최소 1년 초과 3년 원칙, 단 3년마다 재검토
			예외	타당한 사유있을 시 거래유지기간 이전에 전력거래 종료가능 <삭 제>
	제고	제재기준	<신 설>	미 이행시 재신청 참여제한 할 수 있음 (거래유지기간의 3배) KPX 정관에 따라 회원제명 할 수 있음
		거래종료 전 사전통보	<신 설>	종료 희망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까지
	제고	용량가격 적용전력	[하계피크기간(7~9월), 전월] 중 시간대별 최대 유효구매전력량	[하계피크기간(7~9월), 동계피크기간(12~2월), 전전월] 중 시간대별 최대 유효구매전력량
			직접구매 1년 미만 시 실적 기준 불명확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직접구매 이전 실적 활용 (단, 실적 부재시 수전설비 용량의 30%)
	제고	용량가격	일별 육지발전기 기준용량가격 평균	매년 6월 산정한 육지발전기 기준용량가격 평균
		재정보증 강화	40일분의 전력거래 대금수준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보증규모)	80일분의 전력거래대금수준 (채무불이행 이후 전기공급중단 시까지 보증기간 추가)
			공공기관 또는 신용등급 최우수등급(AAA)을 받은 자는 면제대상	면제대상은 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한정
	약정서	약정에 관한 규정(○), 약정서(x)	약정사항 구체화 및 서식 마련	
	시장 참여 자	전력구매 외 추가비용 공동부담	<신 설>	전력구매에 따라 판매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직접구매자도 공동부담 원칙 명시
		복지특례 할인비용	<신 설>	복지특례할인비용 부담
	형평성	시장감시	감시 대상에서 제외됨	감시대상에 직접구매자 추가
		수수료	직접구매수수료 부과	전력거래수수료로 단일화하여 부과 (타 사업자와 동일)
제고		수요자원 거래	직접구매자 참여(X) / 비용 부담(X)	직접구매자 참여(O) / 비용 부담(O)
	분기별 최대 수요자원시장 전력거래대금 재정보증		분기별 최대 수요자원시장 전력거래대금의 90분의 130 재정보증	



□ 회의결과 : 수정가결

○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가결하는 데 동의함

- (제3.2.2.6조) 거래유지기간 및 제재 기준에 관한 내용 수정

주요
토의내용

재상정(안)	수정 가결(안)
③ 제1항에 따른 거래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직접구매자가 일방적으로 전력거래 종료한 경우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 종료일로부터 해당 직접구매자에 적용된 거래유지기간의 3배 에 달하는 기간만큼 직접거래를 위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직접구매자가 일방적으로 전력거래를 종료한 경우 전력거래소는 종료사유 등을 고려하여 전력거래 종료일로부터 해당 직접구매자에 적용된 거래유지기간의 최대 3배 에 달하는 기간만큼 직접거래를 위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거래유지기간을 위반한 직접구매자를 전력거래소 정관에 따라 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④ 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거래유지기간을 위반한 직접구매자를 전력거래소 정관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심의 결과 : 수정가결

2025년 2월 2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붙임 2】

보고사항 결과

보고내용	보고결과
▪ (제1호) 제25-1차(긴급) 규칙개정위원회 결과	○ 원안 접수